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520호

2019. 5. 16.(목)

함께
서울



제7153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98
제7154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관정비 조례	99
제7155호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5
제7156호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관정비 조례	107
제7157호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3
제7158호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14
제7159호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5
제7160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6
제7161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8
제7162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9
제7163호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19
제7164호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21
제7165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122
제7166호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24
제7167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5
제7168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127
제7169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0
제7170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131
제7171호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32
제7172호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133
제7173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35
제7174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36
제7175호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37
제7176호	서울특별시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	138
제7177호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0
제7178호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1
제7179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142
제7180호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3
제7181호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44

◆ 서울특별시조례 제7162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의 본문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조례 내에 있는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 방지(제6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163호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함.

제2조제4호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한다.

제10조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13조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중 "중증장애인"을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